

승강기 부품 교체업체 선정 입찰 공고

1. 단지개요

- 가. 단 지 명 : 두산위브더제니스
- 나. 소 재 지 :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179번지
- 다. 단지규모
 - 아파트 : 9개동 1,494세대 外 부대, 복리시설
 - 연면적 : 429,152.6942㎡
 - 층수 및 라인 : 지하5층 ~ 지상 54층, 13개 라인
- 라. 사용승인일자 : 2009년 12월 24일

2. 입찰에 부치는 사항

- 가. 승강기 MAIN ROFE 2개소 교체(101동 1호기·2호기)
- 나. 승강기 사양 : DS4-SA20(1350)-CO-240-52/52
- 다. Rofe 및 Roping 종류 : D12 A종, 더블랩 2:1 로핑방식
- 라. 로프구조 : 8 × S(19) + SS
- 마. 로프길이 : 385m × 7본 × 2대
- 바. 작업 후 하자보증기간 내 관리주체의 요구시 COMPEN ROFE(6본 × 2대) 및 주로프(7본×2대) 1회 컷팅 작업 포함
- 사. 로프교체 작업 종료 후 총고측정 및 LEVEL 조정작업 실시
- 아. 우리 아파트 승강기 기종과 시브(도르레)에 적합한(로프 시험성적서 기준) 로프로 시공 할 것
- 자. 입주민 편의를 위하여 1대씩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오전 9시 30분 ~ 오후 5시 30분까지로 제한하며 작업시간 이외에는 승강기를 안전하게 운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

3. 참가자격

- 가. 관계법령에 의한 승강기보수업 등록 업체
- 나. 승강기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업체
- 다. 하자보증서 3년 제출 가능한 업체
- 라. 국토교통부 고시의 입찰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

4. 제출서류

- 가. 사업자등록증 및 승강기보수업등록증 사본 각 1부
- 나.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사본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각1부
- 다. 법인인감증명서1부 및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 원본 각 1부

라. 법인등기부등본 1부

마.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

바.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

사. 작업계획서 1부

아. 견적서(부가세별도), 입찰서(국토해양부 고시 양식 사용), 입찰보증금(입찰금액의 5%이상 현금, 공제증권, 또는 보증서) 각 1부-별도 밀봉

5. 입찰등록 마감 및 개찰

가. 등록일정 : 2014년 3월 18일(화요일) 13시까지

나. 등록장소 :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

다. 개찰일시 : 2014년 3월 18일(화요일) 19시

6. 낙찰자 결정 : 참가자격과 제출서류 등 제 요건을 충족하는 응찰자로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854호에 의거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

7. ROFE 시험성적서 제출 : 낙찰된 업체에서는 반드시 작업 전 우리 아파트 승강기 기종 및 시브(도르레)에 적합한 ROFE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관리주체의 승인을 득 한 후 작업을 실시 할 수 있다.

8. 하자보수보증서 제출 : 작업 종료일 기준으로 3년간 관련작업에 대하여 총공사금액의 10%이상의 하자이행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9. 기타사항

가. 본 입찰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854호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함

나.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에는 계약 체결 후라도 선정 및 계약은 무효처리

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(☎759-6226)로 문의 바람. 끝.

2014년 3월 11일

동우씨엠(주)

위 대리인 두산위브더제니스관리사무소장